

'15년 하반기 손사법인 간담회 자료

[2015.11.25.]

* 능·충청 영제리에게
2주당위로 권쟁사랑
안내할거.
* 부신인원 예방

1 마감업무

가. 변경된 마감업무

변경 전	변경 후
○ 월말 마감 1회	○ 주마감(매주 금요일) ○ 매월 마지막 주 - 화요일, 최종 말일

나. 세부 마감업무 내용

* 5. 예방회 이상건 중경보서
반드시 제출함.

- 현장보고서 전산 등재 및 제출 철저
 - 지연보고서 제출 생략하고 현장보고서만 등재 후 서면제출
반드시 추정보험금 기재 (손해액이 아님) ✓
- 현장보고서 제출일 및 마감 전 추정보험금 알림 기준
 - 현장보고서 제출은 +3영업일 철저 준수
(대상 : 전 종목(면책건 포함) 금액과 관계없음)
 - 주마감 제출기준 : 금요일 4시까지 당해 화요일까지 수입
받은 전 건 현장보고서 전산 등재 및 인편 또는 우편 제출
(ex) 아래와 같이 12일이 주마감일인 경우 화요일 9일까지
수입받은 전 건 현장보고서 제출

일요일	월요일	화요일	수요일	목요일	금요일	토요일
7	8	9	10	11	12	13

○ 매월 마지막주 제출기준

- (1) 화요일 마감 : 전주 금요일까지 수입받은 전 건
현장보고서 전산 등재 및 인편 또는 우편 4시까지 제출
(ex) 아래와 같이 27일이 마지막주 마감일인 경우 전주
금요일인 23일까지 수입받은 전 건 현장보고서 제출

* 각 리빙지점 똑같은 양부 수준 유지
(정비공유)

농기계 손해를 15%

트랙터 손해를 180%

2 농기계 업무지침

가. 감가상각 품목 추가 및 경과월수 기준일 확립

- 콤팩트 예취부는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부품에 해당되므로 감가대상품목에 포함
- 감가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경과월수를 신품 구입일로부터 사고일까지의 월수를 계산함

구분	개선 전	개선 후
감가대상품목	엔진, 미션, 캐빈 등	엔진, 미션, 캐빈, 예취부 등
감가대상품목 경과월수 기준일	가입일로부터 사고일까지	구입일로부터 사고일까지 ✓

- 감가액 산출방법 : 엔진, 미션, 캐빈, 예취부 등 새 주요부품 - 수리비(공임제외) × 년감가상각률 × 경과월수 ÷ 12

나. 견적서 확인 관행 확립

- 정비일제 평판과 직인이 찍힌 수리비 청구서(견적서)를 청구 ✓
- 부품가격에 공임이 포함된 수리비 청구서(견적서) 청구 차단 ✓
- 정비점검표, 정비의뢰서, 작업지시서 등을 견적서 대체 서류 청구 차단 ✓

*부품가격에 공임이 포함되어 있으면

공임을 별도로 리본(이중공대 리본 사례)

다. 수수료 지급 부문

구분	개선 전	개선 후
위장사고 가형견적서	○ 수수료 - 손해액의 × 5배	○ 수수료 - 손해액의 × 5배 ○ 포상금 - 250,000원 (기본보수료×50%) ✓
기계착시표	○ 청구포기서 청구 시 건당 600,000원 ○ 청구포기 미 청구 시 건당 500,000원	○ 청구포기서 청구 시 건당 720,000원 ✓ ○ 좌 동 ✓

- 위장사고 적발건 : 수수료 외 조사자에게 포상금 추가 지급
- 기계적 사고건 : 건당 72만원 단일 지급

라. 서류 표준화

구분	구비서류
기본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험금 청구서 ○ 개인(신용)정보 수집,이용, 제공 동의서 ○ 면세유류 관리대장 (없을 경우 생략) ○ 명판과 직인이 찍힌 견적서 ○ 피해물 사진(작업사진, 기대번호 등) ○ 항공방제기의 경우 항공기조종사면허증 ○ 수리비가 5백만원 이상일 경우 사고현장 사진
기타서류 (필요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비업체 입금시 사업자 등록증, 통장사본 ○ 피보험자가 선 지급한 경우 납부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등 ○ 사고현장 사진, 견인(구난)영수증, 사고사실 관계서류(경찰서, 소방서) 등 ○ 임대차계약서, 기술소견서 등

3 청구금액 기재

- 별첨 「평가내역」 반드시 첨부
- 대상 : 화재, 배상, 가축, 농기계만 이외는 제외 ✓

1. 청구금액이란

- 청구권자가 청구한 금액(건적금액, 독립손해사정사가 제시한 금액 등)
- 인과관계 불인으로 삭감하기 前 금액
- 손해사정 하기 前 금액
- 일부보험으로 비례보상 하기 前 금액
- 지분상속으로 분할 지급 前 금액
- 배상(상해감소, 기왕증감액, 치료비 조정, 과실상계, 합의금 조정 前 금액)
- 과다청구(일반피해과장, 편승수리 前 금액)

2. 평가내역 (예시)

★ 비준

[평 가 내 역]

○ 청구유형

-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기재
(한개만 선택 기재 요망)

< 아 래 >

중분류	소분류
인과관계 불인	인과관계불인
손해액 산정 후	손해액 산정후
일부보험	일부보험
지분상속	지분상속
일반배상감액	장해감소
	기왕증감액
	치료비 조정
	과실상계 합의금 조정(감소)
과다청구	일반피해과장
	일반(재물,배상)과장
	편승수리

○ 평가내역

(단위 : 원)

구 분	청구금액	지급금액
건물	175,106,800	84,465,530
기계	1,358,181,025	132,507,488
합계	1,533,287,825	216,973,018

4 보고서 이미지 등재 철저



- 모든 손사보고서(현장, 종결) 이미지 또는 파일 등재 의무화
→ 금번 금감원 종합검사 기간내 **보고서 누락 지적됨**
- 손사보고서(현장, 종결) 첫장에 사고번호 반드시 기재

5 기타 사항



- 보험금 5천만원 이상 건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제출 후 당사 검토 후 손해사정 최종보고서 제출
- 보험금 5천만원 이상 건 피보험자측에 보험금 안내 후 형식적으로 보내는 중간보고서는 지양
- 통상적인 손해액 검토는 손사법인 결재자분들이 충분히 검토 (이런 것들이 종결보고서로 잘못 왔을 경우는 업무과실 임)요망
⇒ 적산정보, 신축단가표 시세보다 높은 것
(예) 철골건물가액, 반자틀, 타일, 창호, 판넬등등
실행단가(시세)확인
- 2억 이상 보험금 지급 건은 종결보고서 제출 1주일 전 (매주 수요일 보고)에 당사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안내
⇒ 당사 주간업무보고를 위함
- 손해사정 시 중요 사항의 결정
 - 정년감가율, 보험가액, 잔존물, 손해액, 구상 등 지급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당사 담당자와 협의 요망
 - 보험가액평가기준 책자에 의거 손해사정을 하며, 이와 상이하게 손해사정 시 반드시 당사 담당자와 협의 요망
⇒ 임의로 평균감가율 적용, 집기 수시미상인 경우 30% 감가인데 임의로 80%감가 적용, 의류 정년감가율 13.33%인데 1식 25%, 일반화재보험에 가입한 축사,계사 등 평가 시 파이프조 구조(구조용강관)일 대 경량철골조 정년감가율 적용, 일반화재보험 축사,계사 "보험가액 및 평가기준" [별표1] 건물의 추정 내용년수 및 정년감가율표 상 맨 우측 적용 등